

# 순천대학교 규정심의위원회규정

제정 1982. 8. 22.  
개정 1992. 3. 4.  
개정 1995. 3. 29.  
전문개정 1996.6. 24.  
개정 2007. 6. 26.  
개정 2020. 2. 27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(이하 "이 대학교"라 한다)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안을 심의하기 위한 순천대학교규정심의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이 대학교의 제규정의 제정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(개정 1995. 3.29)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 
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며, 위원은 기획처장·사무국장과 교무과장·학생지원과장·총무과장·기획조정과장 및 이 대학교 조교수 이상 교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. (개정 2007. 6. 26, 2020. 2. 27.)  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,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,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
제5조(관계관의 출석 및 의견 청취)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규정안을 제출한 관계관을 회의에 참석시켜 제안 설명하게 하거나,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6조(회의록) 위원회에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하며, 회의록에는 참석위원 2인이상의 서명·날인을 받아야 한다.

제7조(수당) 위원, 간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총무과 담당업무 주무가 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1982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92. 3. 4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995. 3. 29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996. 6. 24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7. 6. 26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0. 2. 27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